

의안번호	2200429
의 퇴 인	최은석의원
회 답 일	2024.6.17.
추계번호	24B0443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720만원, 2030년 72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억 1,600만원(연평균 2,32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80	—	—	—	—	80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8조)	7.2	7.2	7.2	7.2	7.2	36
합계	87.2	7.2	7.2	7.2	7.2	116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운영자 및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철도 소음으로 인한 철도주변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함. 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음(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철도소음으로 인한 철도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함(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함(제3항)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함(제6항) 1.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안 제7조 (철도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철도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 철도소음 저감 방안 3. 철도소음대책사업 4. 철도소음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사업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 (철도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철도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철도운영자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철도운영자로 한정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그 밖에 철도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함(제2항)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5	안 제9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철도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철도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음(제1항)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제2항)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제3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의무규정
7	안 제11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3조 (보상금의 지급)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에게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의신청인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9	안 제16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함(제2항)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제4항)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음(제5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의무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10	안 제17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1항) 1. 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함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함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11	안 제18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제1항) 1. 철도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철도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철도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의무규정
12	안 제19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제1항)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13	안 제20조(자금)	철도소음대책사업,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철도운영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함(제1항)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제2항) 1. 철도소음대책사업 2. 소음피해 보상금 3. 주민지원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14	안 제21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1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함.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2조 (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22조의3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름(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미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소음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선언적 규정으로 동 조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	미대상: 국토교통부는 장관 표창 등 기관 내 상훈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별도 재정소요는 미발생한다는 입장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3	안 제7조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4	안 제8조 (철도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	미첨부 3호: 현재 소음대책지역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소음대책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9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	미첨부 3호: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측정망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도소음지역 지정은 현행 소음측정망 지정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필요한 물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량에 관한 정보 부재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장, 교통소음 등 각종 소음을 체계적 관리, 국가소음진동시스템을 통하여 국가(1,098개), 지자체측정망(1,151개 운영) 운영중이며, 관련 예산은 환경부에 편성되어 있음 － 환경부 생활공해관리사업: 68.4억원(2024년) * 기기구입비 단가는 다음을 참고 － 환경소음 자동측정망: 5,000만원(개당) － 층간소음측정장비: 500만원(개당)
6	안 제10조(타인의 토지에 의 출입 등)	×	미첨부 3호: 토지출입, 철도소음지역 지정 등에 따라 국가의 손실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철도소음지역 현황이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인정기준, 피해가구, 피해가구당 지원방법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군소음피해 지원, 공항소음 피해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사업내용은 [참고자료]에서 확인
	안 제11조(보상금 지급기 준 및 신청절차 등)		
	안 제13조(보상금의 지급)		
7	안 제16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	미첨부 3호: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지 않고,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주민지원사업, 사업지원규모 등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17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8	안 제18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9	안 제19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미첨부 3호: 중앙심의위원회가 철도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을 통하여 제1종 구역~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역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이 때문에 현시점에 지역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10	안 제20조 (자금)	×	미첨부 3호: 현재 철도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 되기 전이고, 소음방지 대책 사업계획과 지원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어, 정부의 국고지원 규모, 소음대책사업,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지원사업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21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	미첨부 3호: 철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의 부담금 면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안 제22조 (세제 지원)		제 비용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현황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세제 감면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가 이뤄지는 경우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분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22조의3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조문 중 안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18조(중앙소음대책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중앙소음대책심의 위원회(안 제18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 (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 등에 관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환경부 소관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소음관리를 위해 5년 주기의 종합계획¹⁾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 따른 「제4차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2021~2025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이 실시된 바 있어(2020년 0.8억원)²⁾ 추계기간 동안 1회의 기본계획 수립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표 2]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80	-	-	-	-	80

□ (안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산함

-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이 부재하므로 연 6회 개최, 9인 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은 4인으로 가정함
-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 사례금(안건 검토비 등 포함)은 1건 개최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³⁾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수당(720만원) = 4인×6회×30만원

[표 3]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8조)	7.2	7.2	7.2	7.2	7.2	36

2) 조달청, 나라장터.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 (일부추계) 이상의 과정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80	-	-	-	-	80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8조)	7.2	7.2	7.2	7.2	7.2	36
합계	87.2	7.2	7.2	7.2	7.2	116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 등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분석관
경제비용추계과	이유미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소음보상금 관련 주요 사업 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군소음보상법」 / 국방부	「공항소음방지법」 / 국토부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지원기준 *단위: 웨클	85/80(대도시/기타도시) 이상 *소형/대형화기 사격장은 69/84dB	75 이상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지원내용	소음피해보상금	· 손실보상(건물철거·이전, 토지매수) · 소음대책사업(방음, 냉방, 전기료, TV수신료) · 주민지원사업(주민복지, 소득증대 등) · 세금감면가능(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경계지 설정 기준	건축물 기준으로 경계에 걸친 경우만 인정	· 도시지역 - 단독주택: 경계에 걸친 건물의 연접한 지번까지 포함 - 공동주택: 경계에 걸친 건물의 동만 인정 · 비도시지역 - 지형지물 등 기준으로 경계설정 (1웨클 이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서」, “시설정책지원(2533-320): 군소음피해 보상 관련 경계지 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 2022.

[국방부 소음피해 관리 및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2024
소음피해 관리 및 지원사업	· 소음영향도 조사 756백만원 · 주민 보상금 지급 124,237백만원 · 위임사무 지자체 인건비 8,067백만원 · 보상금결과통지 수수료 130백만원 · 자동소음측정망 시범 설치비 3,537백만원 ·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158백만원	136,884

[국토교통부 공항소음대책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2024(국비)
공항소음 대책사업	총사업비(532억원) 중 공항공사 부담분(474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국고지원(57.8억원) · 방음시설 설치·보수 : 60억원 · 냉방시설 설치·보수 : 74억원 · 주민 전기료 등 지원: 231억원 · 주민지원사업: 110억원 · 토지매수 등 기타 : 55억원	5,782